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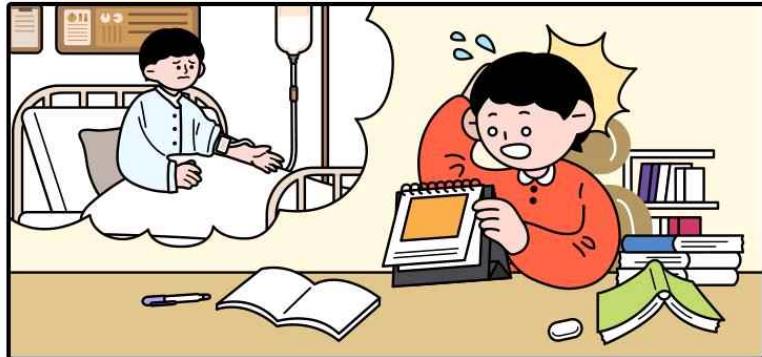
학교안전사고 장기입원학생

학습지원 사업 안내



학교안전공제중앙회

장기입원학생 학습지원 사업이란?



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질병·부상으로 4주이상
장기결석(입·통원기간 포함)이 예상되는 경우
**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을 통해
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.**



사업대상

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질병·부상으로
4주이상 장기결석(입·통원기간 포함)이
예상되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
전국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



사업내용

온라인 교육 콘텐츠(중학생) 및
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



교육 콘텐츠 지원 : EBS 온라인 교육 콘텐츠(중학생)

학습 멘토링 지원 : 한국장학재단 등과 연계한
멘토링 서비스 제공

학습 기자재 지원 : 태블릿 PC



신청방법

학생(학부모)는 학교를 통해
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
공제중앙회로 제출



신청기간

사고발생일로부터
60일 이내



구비서류

신청서, 학교안전사고 통지서,
진단서(향후치료에 대한
의사 소견 포함)



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간 기준

대상자 선정 기준

- 학교안전사고로 사·도공제회에 접수된 사고
-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질병·부상으로 4주이상 장기결석(입·통원기간 포함)이 예상되는 경우

지원기간 기준

진단주수(치료기간), 입원기간,
학교출결 상황을 고려하여
1개월(지원 개시일로부터) 단위로 지원

※ 필요 시 연장 신청 가능
(중앙회 자체 심사 후 연장 여부 결정)

문의 학교안전콜센터 ([☎1688-4900](tel:1688-4900))

